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채권을”을 “채권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을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각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그 밖의 예금등 채권과 별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신탁업자 및 보험회사가 취급한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 본문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
외한다)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 ~ ③ (생략)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 용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 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 ----- ----- ----- -----.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 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 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u>개인</u> <u>형퇴직연금제도</u> 또는 법률 제 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 험료는 제외한다.	1. ----- ----- -----. ----- <u>개인형</u> <u>퇴직연금제도</u> , 「 <u>근로자퇴직</u> <u>급여 보장법</u> 」 제2조제14호에 따른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u>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u> <u>기금제도”라 한다)</u> ----- -----.			
1의2. ~ 3. (생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② (생략)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
형퇴직연금제도, 법률 제10967
 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
 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 제31조제
 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공고일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
 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 -----

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에
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해당 가입자로
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만 해
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
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
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

----- 채권 및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

-----.

----- 개
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예금
등 채권의 경우: 각 목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그 밖
의 예금등 채권과 별도로 보
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

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가
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
를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신탁업자 및 보험회사가 취급한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40조 및 제41조 본문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예금등 채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
금등 채권의 경우: -----

 -----(제1호

<u>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u> <u>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u> <u>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u> <u>적용</u>	<u>의 각 목에 해당하는</u> ----- ----- ----- --
---	---